

제263회 임시회

2007. 9. 12(수)

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서의 전환·설립을 위한
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자치위원회
전문위원 고 일 준

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서의 전환·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9월 3일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9월 4일

3. 제안이유

개정 「전자정부법」 제50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·설립하게 됨에 따라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및 1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개정 「전자정부법」(2007. 7. 4일 시행)에서 그간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설립·운영되어 온 자치정보화조합을 「전자정부법」에 의한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, 그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·설립하고자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려는 것임

5. 검토의견

자치정보화조합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50조에 의해 2003년 2월 24일 설립되었고,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가 조합에 참여하여 자치단체간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교육 등 지역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, 우리도에서는 **422백만원의 출연금**과 **5년간 312백만원의 분담금**을 납부하는 등 자치정보화조합에 참여해왔음.

※ <참고자료 1> 자치단체별 조합 출연금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시 도	계	2003년 (조합설립 출연금)	2004년 (기반조성 출연금)
총 계	8,786	4,786	4,000
부 산	750	408	342
대 구	622	338	284
인 천	659	357	302
광 주	479	261	218
대 전	506	275	231
울 산	481	261	220
경 기	1,376	745	631
강 원	461	254	207
총 북	422	232	190
충 남	497	270	227
전 북	468	257	211
전 남	502	276	226
경 북	594	328	266
경 남	641	349	292
제 주	328	175	153

※ <참고자료 2> 자치단체별 조합 분담금 내역

(단위 : 천원)

시 도	계	2003년	2004년	2005년	2006년	2007년
총 계	6,438,390	940,326	1,033,064	1,285,000	1,414,000	1,766,000
부 산	545,858	79,896	88,429	109,946	120,416	147,171
대 구	451,682	66,779	74,340	91,166	98,724	120,673
인 천	485,531	70,332	77,469	97,041	107,298	133,391
광 주	350,713	51,963	57,704	70,111	76,724	94,211
대 전	372,268	54,605	61,165	74,369	81,466	100,663
울 산	352,499	52,517	58,251	70,789	76,765	94,177
경 기	1,012,561	141,429	158,381	202,767	221,507	288,477
강 원	334,706	50,075	54,114	66,357	73,570	90,590
총 북	312,264	46,100	48,836	61,135	68,777	87,416
충 남	370,980	53,487	58,292	72,787	82,022	104,392
전 북	340,605	50,923	54,408	67,800	74,420	93,054
전 남	362,360	54,511	58,632	72,539	79,506	97,172
경 북	428,131	63,892	68,960	85,325	93,566	116,388
경 남	469,195	68,253	74,525	93,827	104,031	128,559
제 주	249,037	35,564	39,558	49,041	55,208	69,666

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「전자정부법」이 개정(2007.7.4 시행)됨에 따라 자치정보화조합을 그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특수법인 형태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·설립하고자 조합해산에 대해 도의회 동의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, 해산동의안의 법적 근거 및 절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.

다만, 지역정보화 추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자치정보화조합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정보화기반이 취약한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.

붙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·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